변화된 법학교육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계일**

목 차

I. 들어가며
II. 법철학 교육의 내용과 대상
1. '법학'의 대상영역에 대한 학문이론적 고찰
2. 법학의 영역 구분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분
3. 특히, '법철학' 영역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4.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 내용구성의 현황보론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 형식구성의 현황
III.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제도적 여건
IV. 법철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
1. 이상적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방안
2. 현실적 차원에서의 교육개선방안
VI. 맺으며

* 본고는 2010년 12월 17일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기초법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초법 관련 5개 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원래 본고의 밑바탕이 된 발표문은 법철학 교육형식에 관한 제법 긴 장을 교육내용에 관한 II장 다음에 담고 있었는데 한정된 지면관계상 이를 생략하고 로스쿨 체제하 법철학 교육형식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분석만을 보론의 형식을 빌려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에 상응하여 법철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장에서도 교육형식의 개선과 관련된 절을 대폭 축소하였다. 아쉽지만, 이 부분들은 추가적 논문게제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고의 기초가 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신 한국법철학회 소속 여러 교수님들께, 그리고 본고의 기본 구상을 소개한 한국법철학회 11월 독회에 참여하여 여러 중요한 조언말씀을 해 주신 교수님들, 무엇보다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맡아 유익한 지적을 해 주신 양천수 교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kilee@wonkwang.ac.kr), 한국법철학회 회원

[국문 요약]

본고는 개원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기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법철학 교육내용과 교육형식, 제도적 여건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실증적 연구를 위해 1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고찰의 순서를 살펴보면, 우선 법학의 대상영역에 대한 학문이론적 고찰을 크라비츠와 피벡의 이론을 중심으로 개관하고 법철학 교육내용의 가능한 형태를 유형화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화에 비추어 현재 우리 대학들의 법철학 교육내용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보론의 형식을 빌려 로스쿨 체제하 법철학 교육형식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분석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뒤따르는 장에서는 법철학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위치해 있는 제도적 여건이 현재 어떠한지를 역시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에 기초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법철학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주제어] 법철학 교육, 로스쿨, 학문이론, 크라비츠, 피벡, 교육내용, 교육형식, 제도적 여건, 설문조사, 과제

Ⅰ. 들어가며

우리는 법학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법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성찰은 우리 법학자들의 항구적 과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법학교육체제의 변동이 시작된 이후로 법학계에는 법학교육의 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1] 철저한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로스쿨 체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가 고민했던 법학교육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구체화되고 실천

1) 2006년 한국법철학회에서 '법학의 방법과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2008년 법과 사회이론학회에서 '한국 법학전문대학원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린 바 있다. 또한 2006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21세기 법학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005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로스쿨 개원 전 전국의 많은 법학연구소에서 '새로운 법학교육체제에서 어떻게 법학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많은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물론 그 외에도 법학교육을 주제로 한 많은 개별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되었는지에 대해 되돌아 볼 시점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현재 법학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변화된 체제 속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역시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이다. 이런 점에서 기초법 학회 통합학술대회의 첫 주제로 '로스쿨 체제 하에서 기초법 교육'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교육체제 변동과 함께 각 학교에서 기초법 교육을 수행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여러 낙관적으로만 평가될 수는 없는 교육현실에 기인하는-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고는 — 발표자가 한국법철학회를 대표해서 나온 까닭에 — '로스쿨 체제 하의 법철학 교육'이라는 표제를 달게 되었다. '법철학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견 그 내용이 자명해 보일지 몰라도, '법철학 교육'이 무엇을 함의하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교육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가르침의 대상으로서 법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철학을 학문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는 경우와 달리 이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그 대상과 내용에 대해 독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현재 로스쿨과 법과대학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철학 수업 내용의 유형화와 평가 역시 가능해 질 것이다. 다음으로 '교육형식'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철학은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져야 하는가?' 이는 일견 어렵지 않은 물음처럼 보일 수 있을 지라도, 교육방식을 둘러싼 교육학의 논의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법철학 교육에 있어서도 역시 교육방법론에 대한 성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히, 교육방법이 교육내용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법철학 교육방법에 대한 성찰은 법철학 교육내용에 대한 성찰과 깊은 관련을 맺지 않을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더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특정한 방법에 의한 교육내용의 교수는 '구체적 제도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제도적 공간이

법철학 교육의 수행을 위해 적절한 형태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이는 특히 로스쿨 개원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점 매우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법철학 교육내용과 교육형식, 제도적 여건에 대한 고찰을 주 연구목적으로 삼되, 개원 2년이 지나가고 있는 현 시기 로스쿨 체제 하의 법철학 교육현실이 어떠하고 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고찰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 물론 현실에 대한 분석은 그에 대한 분석틀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내용, 교육형식 고찰을 위한 간단한 이론틀 마련은 불가피할 것이다. 기초법 교육 현황의 파악을 위해서 본고는 설문조사방식을 택하였다. 모든 학교 법철학 교수님들께 설문을 받아내지는 못하였고, 주로 10여개 학교 교수님들께서 답해 주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고찰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철학의 대상영역에 대한 학문이론적 고찰을 개관하고 그 교육내용의 가능한 유형을 유형화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유형화에 비추어 현재 우리 대학들의 법철학 교육이 어떤 흐름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Ⅱ.). 다음으로는 보론의 형식을 빌려 로스쿨 체제하 법철학 교육형식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분석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하며, 뒤따르는 장에서는 법철학 교육의 내용과 형식이 위치해 있는 제도적 여건이 현재 어떠한지를 역시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에 기초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Ⅲ.). 마지막 장에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법철학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논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다(Ⅳ.).

Ⅱ. 법철학 교육의 대상

우리가 통상 '법철학을 가르친다'고 말할 때, '법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학술적으로 이미 해명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가운데 은연중 '법철학의 교육대

상' 역시 자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대상으로서의 법철학'을 말할 때 그 구체적 대상은 학문적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철학의 교육대상 영역을 밝히기에 앞서, '법학의 교육대상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법학의 교육대상에 관한 질문에 '여러 법 영역에 관한 법학지식'이라고 쉽게 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법학의 교육목적이 단지 법지식의 전달일 뿐인가'라고 묻는다면 법학자들은 그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단지 '법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지식을 적절히 활용하는 역량의 습득' 역시 법학 교육목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법지식을 활용하는 역량은 물론 법지식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전제한다. 하지만 법학의 교육대상을 단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역량의 습득'에로 확장시킨다면, '어떠한 역량의 습득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육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법지식을 이해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학자적 역량'이 있을 수 있고, 반면 법지식을 각각의 사안에서 주어진 법제도적 조건하에 적절히 해석, 적용하는 '실무법률가들의 역량'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역량의 습득 모두에 '기본적 법지식'의 이해는 전제되어진다는 점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법을 배우더라도 교육내용에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않을 수 없는 지식들이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본적 지식습득에 있어서도 어떠한 역량의 배양을 염두에 두는지에 따라서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방점은 달라질 수 있다.

'법학을 학문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배양'과 '제도적 여건 속에서 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구분은 법철학계 내에서 아주 새로운 관념은 아니다. 이는 법률가들이 행하는 작업의 성격에 관한 피벡(Th. Viehweg)이나 크라비츠(W. Krawietz)의 분류에서 확인될 수 있다.

1. '법학'의 대상영역에 대한 학문이론적 고찰

크라비츠는 법학자들이 하는 작업은 '학문체계(Wissenschaftssystem)'의 작동에 속하고, 법률실무가들, 특히 법관이 하는 작업은 '법체계(Rechtssystem)'의 작동에 속함을 지적하면서 양자의 성격이 구분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2]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인다면 각각의 체계에서 원활히 작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습득에 있어서도 상호구분이 불가피할 것이다. 학문체계 내에서의 작업은 학문체계 나름의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할 것이고, 법체계 내에서의 작업은 역시 법체계가 요구하는 나름의 전제조건의 충족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크라비츠뿐만 아니라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피벡의 언급 역시 유사한 구분을 이미 전제하고 있다. 피벡은 '체테틱(Zetetik)'과 '도그마틱(Dogmatik)'을 구분한다.[3] '체테틱'은 결정을 해야 함에 구애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의문시하면서 진리를 추구해 갈 수 있는 영역으로 정의되는 데에 반해서[4], 도그마틱은 한정

2) W. Krawietz, *Recht als Regelsystem* (Darmstadt, 1984), S. 59; ders., "Vernunft versus Rationalität des Rechts? Zur Theoriebildung in der Rechtswissenschaft", in: H. Haller u. a. (Hrsg.), *Staat und Recht. FS für G. Winkler zum 60. Geburtstag* (Wien [u. a.], 1997), S. 536 ff. 유사한 인식으로 또한 N. Luhmann, *Das Recht der Gesellschaft*, 2. Aufl. (Frankfurt am Main, 1997), S. 73.

3) Th. Viehweg, "Ideologie und Rechtsdogmatik" (1969), wieder abgedruckt in: ders.,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hrsg. von Heino Garrn (Baden-Baden, 1995), 86면 이하; Viehweg, "Systemproblem in Rechtsdogmatik und Rechtsforschung" (1968), wieder abgedruckt in: ders., 위의 책 (이하 Viehweg, "Systemproblem in Rechtsdogmatik und Rechtsforschung"으로 인용), 97면 이하.

4) Zetetik의 어원은 고그리스어로 ζήτησις(zétesis)이다. 이는 탐구, 연구를 의미한다. 학문사적으로 '체테틱'은 '연구를 전면에 내세우는 이론적 자세'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칸트는 '세계지혜' 수업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도그마틱적인 것에 대비되는 체테틱적인 것으로 규정지은 바 있다. 해석학 일각에 있어서 '체테틱적 해석학'이 주창되기도 하였다. 물론 후일 가다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테틱적 해석학과 도그마틱적 해석학의 구분을 그 자체 도그마틱적인 것으로 보고 그 해석학적 해소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법학에서 도그마틱과 대별되는 것으로 체테틱의 영역을 개념화함으로써 체테틱뿐만 아니라 도그마틱 자체의 이해 역시 풍부히 한 것은 전적으로 피벡의 공적이다. 철학사 속에서 체테틱 개념의 활용에 대한 포괄적 설명으로는 L. Geldsetzer, "Über zetetischen und dogmatischen Umgang mit Philosophiegeschichte", in: H. R. Yousefi [u.a.] (Hrsg.), *Wege zur Wissenschaft. Eine interkulturelle Perspektive. Grundlagen, Differenzen, Interdisziplinäre Dimensionen* (Nordhausen 2008), S. 309ff.를 참조하라.

된 지식을 이용하여 '결정'을 해야만 하는 영역, 그렇기에 필연성의 논리가 아닌 '현명한 판단'이 중요해지는 영역으로서 정의된다. 즉, '도그마틱'의 영역에서는 진리(episteme)의 획득이 아니라 각각의 구체적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phronesis)이 중요해진다.[5] 이러한 영역에서 올바르고 적절한 결정은 추상적 사고의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 경험에 입각한 지난한 학습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피벡에 따르면 법지식을 동원해 현명한 '결정'을 수행해야 하는 영역에선 바로 이 도그마틱이 문제된다. 주어진 법규범을 더 이상 캐물을 수없는 도그마로 전제하면서 이들에 기초해 상황에 가장 걸맞은 해결책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실무가들뿐만 아니라 -효력 있는 법을 전제하여 그 최선의 의미를 규명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과거의 선례를 비판, 체계화하고, 다시 이를 기초로 미래의 사안의 올바른 해결을 준비하고자 하는- 해석법학자들에게도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법학자들의 경우 단지 '현명한 결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정들을 '성찰하고 비판'하고, 또 '효력 있는 것으로 전제되는 법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 되묻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법학자들은 '올바른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인식'의 영역에로 넘어가게 된다. 피벡에 따르면 이는 체테틱의 영역이다. 체테틱의 영역은 다시 '분과학문 내의 체테틱'과 '분과학문 안에 갇히지 않는 체테틱'으로의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6] 각 실정법 영역 내에서 법률 적용이나 해석에 대해 성찰, 반성하고 이를 이론화하려는 노력은 '학문적 방법에 의한 법학연구의 수행'으로 일종의 '법학 영역 내의 체테틱'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법학 영역 내의 체테틱 자체에 대해서 다시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영역 역시 있을 수 있다. 즉, 헌법학 내에 각 규범의 올바른

5) 따라서 도그마틱 영역에서 행위의 결정은 '진리'가 아닌, '의견(doxa)'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피벡의 제자 발벡(O. Ballweg)이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Ballweg, "Medium jeder Rhetorik ist die Meinung", in: J. Dyck/W. Jens/G. Ueding (Hrsg.),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Juristische Rhetorik* (Tübingen 1996), S. 138.

6) Viehweg, "Systemproblem in Rechtsdogmatik und Rechtsforschung", S. 100.

해석을 규명하는 '해석법학으로서의 헌법학'이 있는 반면, 그러한 해석법학을 이론적으로 성찰하는 '헌법이론'의 영역 역시 있을 수 있으며[7],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러한 헌법이론의 제반 개념들을 철학적 틀에 기초해 재차 의문에 부치고 이를 성찰하고자 하는 '(헌)법철학'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도그마틱을 법학자의 학문적 작업 영역으로 설정한 그간의 언어사용방식에 비추어 볼 때 법도그마틱과 체테틱에 대한 피벡의 이러한 구분은 익숙하지 않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8] 하지만 그의 분류는 법학의 학문성을 이해하는 데에,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대상으로의 법학이 무엇이며, 어떠한 능력의 배양을 지향하는지를 분류하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물론 법체계와 학문체계의 구분, 그리고 프로네시스의 영역으로서 법도그마틱과 에피스테메의 영역으로서 법체테틱의 구분을 '각 영역에 속하는 행위들이

---

7) 유사한 견지에서 '헌법이론'을 규정하는 입장으로 M. Morlok, *Was heißt und zu welchem Ende studiert man Verfassungstheorie?* (Berlin, 1988).

8) '도그마틱'에 대한 통상적 개념규정으로는 F. Wieacker, "Zur praktischen Leistung der Rechtsdogmatik", in: R. Bubner/K. Cramer/R. Wiehl (Hrsg.), *Hermeneutik und Dialektik, FS für H. G. Gadamer, Bd. II,* (Tübingen 1970), S. 311 - 336; B. Rüthers, *Rechtstheorie, 4. Aufl.* (München, 2008), S. 207ff. 이처럼 피벡은 '도그마틱' 개념을 주어진 실정법의 규범성을 전제하고 이를 해석, 적용하여 결정을 내리려는 법실무나 해석법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분과학문 내의 체테틱'은 각 실정법학 내에서 그러한 도그마틱을 체계적으로 반성, 성찰하는 이론 분과를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학자들이 통상 '도그마틱'을 말할 때에 이는 법실무가들의 법적용과 해석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기보다는 주로 법학자들의 '해석법학'의 영역을 지칭하며, 경우에 따라 법학자들의 법적용과 법해석을 해당 분과 내에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성찰하려는 해당 법의 이론 부분(즉, 피벡이 '분과학문 내의 체테틱'이라고 부르는 분야) 역시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하에서는 통상의 어감에 맞는 설명을 위하여 편의상 피벡의 구분, 즉 '도그마틱', '분과학문 내의 체테틱', '일반 체테틱' 대신 '법실무', '법도그마틱', '법철학'이라는 통상의 구분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법실무가를 위한 교육', '법학자를 위한 교육', '법철학자를 위한 교육'에 대응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구분과 피벡의 구분은 서로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피벡의 '도그마틱'은 본고의 '법실무'와 '법도그마틱의 일부'까지 포괄하게 되며, 그의 '분과학문내의 체테틱'은 불가피하게 본고의 '법도그마틱' 개념보다 더 협소한 범위를 갖게 된다. 그의 '일반체테틱' 개념 역시 단지 '법철학'뿐만이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기초법학분야 역시 포괄한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고가 법철학의 교육내용과 형식을 규명하려고 하는 한정된 목적을 갖는 까닭에 본고의 개념사용을 전제하더라도 피벡의 영역구분은 여전히 분석적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상호 간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는 절대적 상호배제의 함의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각 행위자들은 양자의 영향이 복합적인 방식으로 교차하는 행위장에서 작업하게 될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법학과 법실무가 상호간에 어떻게 의존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법이론계의 여러 학자들이 밝혀 낸 바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영역은 대립되는 영역에서는 최소한 중심적 위상을 차지하지는 않을 역량에 대한 나름의 교육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대해 최소한의 동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법학의 영역 구분에 따른 교육내용의 구분

법도그마틱, 법학 내의 체테틱, 그리고 법철학 등의 일반 체테틱이라는 피벡의 구분이 가지는 함의를 받아들일 경우 법실무가 양성을 위한 교육, 법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 법철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선, 법실무가 양성을 위한 교육부터 살펴보면, 이는 일종의 '도그마틱' 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영역에서의 '프로네시스(phronesis)' 배양이 중요해진다.[10] 그렇다면 법실무에서의 '프로네시스'란 무엇인가? 이는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 법제도적 조건 속에서 법지식을 활용해 가장 적절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취할 수 있는 역량의 배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량의 배양을 위해서는 해당 법제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의 행위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9) 대표적으로 J. Esser, "Dogmatik zwischen Theorie und Praxis" (1974), wieder abgedruckt in: ders., *Wege der Rechtsgewinnung*, hrsg. von P. Häberle/H. G. Leser (Tübingen, 1990), S. 399ff.

10) 프로네시스(phronesis)는 '실천지'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원래 아리스토텔레스 실천철학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프로네시스에 대해서는 이계일, 「법학의 문제 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3(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7면을 참조하라.

전제될 것이다. 또한 법규에 기초해 소송당사자들과 소통하는 능력, 사안을 파악하여 사실 확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법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판결문을 작성하는 능력 등 역시 이를 위해 요구되는 필수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적 행위를 위해 자신이 그 안에서 활동해야할 제도적 조건에 대한 숙련과도 관련된다. 물론 법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놓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사안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벡의 관점이나 그가 전제로 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를 경우 이러한 역량의 배양은 단지 지식의 전달이나 지식의 암기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지식이나 논리적 추론의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그 획득을 위해서는 계속된 경험과 훈련을 통해 해당 분야에 내재하는 나름의 탁월성의 감각을 획득해야 하는 그러한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경험과 훈련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11] 물론 이러한 법적 역량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기존 지식들의 학습을 전제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법규와 판례의 내용, 이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법체계 등에 대한 지식이 학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지식은 법적 결정과 관련된 법실무에서의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한에서 의미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역량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12]

---

11) 피벡을 정점으로 한 마인츠 학파의 구성원인 소보타는 이를 다음의 논문에서 상세히 구체화해 내고 있다. K. Sobota, "Argumente und stilistische Überzeugungsmittel i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 gerichts", in: Joachim Dyck/Walter Jens/Gert Ueding (Hrsg.),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Juristische Rhetorik* (Tübingen, 1996), S. 118f.

12) 문제변증론에 입각한 법학교육방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글로 이미 양천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론: 기초법학을 예로 하여」, 『사회과학연구』 제27집(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63면 이하가 존재한다. 양 교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정향법학교육이 판결문이나 기소장 쓰는 방식과 같은 것을 배운다는 의미에서의 기술적인 법실무 교육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법적 소재를 합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방법과 문제해결역량을 배운다는 의미에서의 실무정향 법학교육이 되어야 함을 지적한다(같은 논문, 72면). 이를 위해 한편으로는 영미로스쿨의 교육이 기술적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한다는 저간의 잘못된 인식을 비판하고 오히려 독자적 학문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표가 영

반면, 법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어떠한 내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피벡에 따르면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적절하고 현명한 행위를 지향하는 영역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을 지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학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올바른 법적 인식과 성찰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역량의 학습을 요구받게 된다. 크라비츠의 개념을 따를 경우 이제 학문체계의 작동방식을 익힐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피벡이 말한 대로 법학 내의 체테틱과 법철학 등의 일반 체테틱을 서로 구분 가능한 것으로 본다면, 일반 실정법학자 양성과 (법철학과 같은) 기초법 분야의 학자 양성의 내용을 서로 간에 추가적으로 구분시키는 것 역시 가능할 것이다.[13]

법학자들이 소위 법도그마틱을 수행한다고 할 때, 학자마다 도그마틱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견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대략적으로 법규의 파악, 그 해석을 둘러싼 판례의 포착, 법규와 판례의 수미일관한 이해를 위한 법체계의 구성, 법체계 배후에 놓인 법원칙의 체계 구상, 그리고 장래의 가능한 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들로 도그마틱이 구성된다고 하는 데에는 일정 정도의 동의가 가능할 것이다.[14]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도그마틱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기존 법규나 판례의 공부, 그리고 법체계 구성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이론 이해들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이해 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문적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인지의 부분은 학문적 작업이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수행되어야

미 로스쿨 제도의 밑바탕에 깔려 있음을 확인한다(같은 논문, 66면 이하).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성의 확립이나 법학방법에 대한 교육은 학설 대립에 대한 학습을 위주로 한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행해져서는 곤란하고 구체적 법적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지향성 – 전문성 – 학문성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점이 문제변증론/논의이론적 관점에 의거해 지지될 수 있음을 밝힌다(같은 논문, 70면 이하).

13) 아래에서는 우선 법학 내의 체테틱을 수행하는 일반 실정법학자 양성과 관련된 부분만 살펴보고 법철학자 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장을 바꾸어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14) 이에 대해서는 Wieacker, 앞의 논문, 311면 이하; Esser, 앞의 논문, S. 397 ff. 도그마틱 개념을 여타 해석 논거들과 구분시켜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잡고자 하는 시도로는 로베르트 알렉시(변종필 외 역), 『법적 논증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355면을 참조하라.

하는가에 대한 입장에 따라 각기 달리 구상될 수 있다. 이는 학자공동체가 인정하는 학문작업의 기준들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서, 무엇보다 학문적 진리탐구결과가 올바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과 관련되는 측면이 있다. 학문적 진리탐구가 올바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일의적 의견확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본인이 가치중립성 공준을 견지하는지[15], 아니면 논의이론적 합리성을 견지하는지[16], 아니면 양자 모두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함께 학문공동체 내에서 확립된 내적 기준에의 적응만이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17] 학문적 작업역량 배양의 기초에 그러한 작업에 전제되는 기본지식에 대한 습득이 요구될 지라도, 그것이 학문적 지식습득만이 아니라 학문적 작업행위의 역량배양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이상 법지식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학문작업을 직접 해 보는 반복적 훈련과정이 무엇보다 강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에서 보듯이 법실무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 법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은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 방점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일차적으로 양자에 모두 필요한 법학지식의 습득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그 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습득 외에 어떠한 역량의 배양을 중점에 둘 것인지의 물음에 대해 그 교육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른 대답이 가능하므로 교육내용구성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18] 이러한 차이의 가능성이 아

15) '가치중립성 공준'에 대해서는 M. Weber,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 (1904)",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3. Aufl., (Tübingen, 1968), S. 146.

16) 위르겐 하버마스(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비판을 위하여』(나남, 2007), 469면 이하; J. Habermas, *Die Wahrheit und Rechtfertigung: philosophische Aufsätze* (Frankfurt am Main, 2004).

17) 더 나아가, 실천철학적 관점에서 법학의 학문성을 구축하려는 시도나 법실무나 법적 작업을 학문적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예컨대 O. Ballweg, "Phronesis versus Practical Philosophy", in: H.-J. Koch/ U. Neumann (Hrsg.), *Praktische Vernunft und rechtsanwendung* (Stuttgart, 1994), S. 63을 참조하라.

18) 물론 교육목표를 실무가 양성으로 설정하더라도 문제해결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로 되는 법

마도—양자 모두에 있어 법학지식의 획득이 일차적으로 목표될 지라도—법학교육체제의 변화(법과대학 체제→로스쿨 체제)와 함께 실무정향적 교육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보다 확산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낳지 않았나 싶다. 물론 실무정향적 교육은 기본 실정법 과목들 외에 일차적으로 실무에서의 작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과 역량의 획득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여러 교과목들, 예컨대 법문서 작성, 사실인정, 모의재판, 협상론 등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학습될 것이다. 하지만 실무의 전제가 되는 기본 법학 지식의 습득을 위해 개설된 기본 실정법 과목의 학습에서 역시—그 목표가 좋은 실무가양성에 놓여 있는 이상—구체적 사례를 통한 문제해결력 양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새로운 변호사 시험법이 기록형을 시험 내용에 포괄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놓여 있을 것이다.

3. 특히, 법철학의 교육내용에 대하여

하지만 본고의 주 고찰대상은 실정법의 교육내용과 방식에 관한 도그마틱적 부분이 아니라 기초법, 특히 법철학 과목의 교육내용과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피벡의 설명에 따를 경우, 법철학은 체테틱의 영역에 속하게 되는 까닭에, 실정법적 결정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성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분과 체테틱으로서의 일반 법학의 영역보다 더 센 진리탐구와 인식비판의 강도를 가지게 된다. 그만큼 법철학 교육의 영역은 '어떻게 구체적 상황에서 적절

학기본지식의 양이나 도그마틱적으로 구성된 법체계 학습의 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교수님마다 구체적 법학교육의 내용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요구되는 지식량을 상당히 높게 잡을수록 해당 법영역에 있어 학자양성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의 내용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이를 낮게 잡을수록 사례학습이나 기록형 연습 등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학자양성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내용과의 차이가 커지게 될 것이다. 어떤 구성이 옳은지에 대해 일의적 답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결국 교육내용 구성은 법실무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에 대한 강사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히 행위하고 결정할 것인가'의 물음과 멀어지고, '법의 인식이란 무엇이고 그 정의로움은 무엇인지'의 물음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법학교육체제가 실무가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법철학의 경우 과목의 성격상 행위의 수행이 아니라 진리의 인식과 성찰을 중점에 두기 때문에 교육내용상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겠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철학을 통해 배양하고자 하는 것이 구체적 상황에서의 행위역량의 확보가 아니라, 인식과 진리 추구인 이상 법철학은 기본적으로 학자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들어가든, 실무가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들어가든 그 성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과목의 성격규정에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부인하기는 힘들 것 같다. 법철학적으로 사유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법학자에게 있어서나 법실무가에게 있어서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철학을 '법이라는 대상에 대하여 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성찰함'이라고 개괄적으로 정의하여 볼 때,[19] 유의해야 할 점은 철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성찰하고자 하는 대상으로서의 법이 단일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다. 성찰의 대상으로서의 법은 구체적 판결일수도 있고, 특정 법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법규와 판결의 학문적 작업, 즉 도그마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학문적 작업이나 판결의 방법론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와 법질서 전반의 정당성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법철학을 법의 개념, 인식, 이념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한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 대상은 이렇듯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법철학이 인식에 대한 반성, 정당성에 대한 성찰을 목표로 삼는 학문성을 요체로 하여, 자신보다 실천적인 분과들(판결 등 법실무나 도그마틱 등)이 주로 다루기 힘든 부분에 대한 학문적 탐구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 하는 까닭에 어떻게 판결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19) '법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아르투어 카우프만(김영환 역), 『법철학』(나남, 2006), 48면 이하와 그곳에 제시된 여타 문헌들을 참조하라.

라는 구체적 물음에 대해 답을 주고자 하는 분과는 아니라는 설명은 일정 부분 맞을지 모른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 중 하나는 우리의 구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과정을 내재할 시에 그 깊이와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법철학이 직접 답을 줄 수는 없더라도 그러한 결정과 행위의 대안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당면한 행위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가능하게 해 줄 경우 이는 그 자체 넓은 의미에서 결정 과정의 한 부분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테틱으로서의 법철학이 구체적인 법적 결정 과정에 대한 성찰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프로네시스 확충을 추구하는 법실무가 양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열린다고 하는 점이다. 반면 법철학이 구체적 법적 문제에 대한 성찰보다 더 추상적 이론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교육내용으로 할수록 자신의 순수학문성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이는 법철학이 자신의 성찰대상의 층위를 어디에 잡느냐와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베르너 크라비츠(W. Krawietz)가 구분한 법철학의 가능한 대상영역에 관한 다음의 층위구분은 본고의 논의전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20]

20) 다음의 다이어그램과 아래의 설명은 W. Krawietz, "Recht als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in: J. Brand/D. Strempel (Hrsg.), *Soziologie des Rechts, FS für Erhard Blankenburg zum 60. Geburtstag*, (Baden-Baden, 1998), S. 185ff.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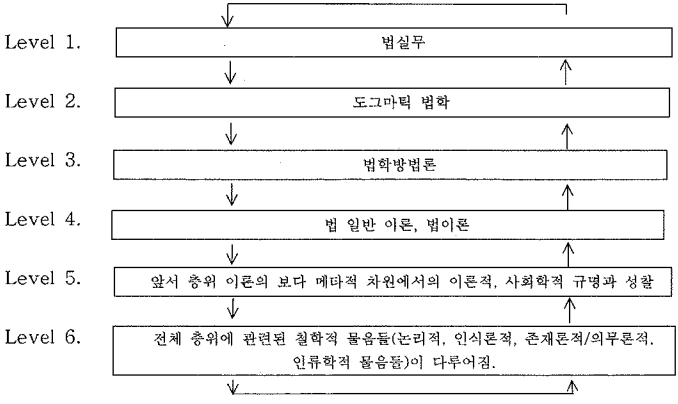

이와 같은 크라비츠의 층위화는 법철학이 수행하고자 하는 성찰의 대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지적한 위의 설명을 확인해 준다. 층위 4에서부터 층위 6까지는 법학 분과 내에서 서로 간의 영역을 구분할 때 통상 법철학의 연구영역으로 포섭되는 영역들이다. 법학방법론의 경우 그 독자성을 강조할 때 법철학과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법철학이 법인식에 대한 성찰을 자신의 중요부분으로 하는 법이론에 방점을 두면 둘수록, 법철학적 연구영역은 법학방법론의 그것을 상당부분 포괄하게 된다. 법학방법론이 표면적으로는 법률의 해석, 적용과 관련되는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목표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구체적 실정법에서 이루어지는 해석, 적용에 대한 메타적 성찰을 대상으로 하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해석, 적용이 어느 경우에 정당성과 학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를 자신의 연구과제로 하는 이상 이는 법학의 학문이론, 그리고 법인식론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연구하는 학자에 따르면, 법학방법론이 통상 두 방향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다고들 이야기되어지는데, 그 한 방향은 실정법 학자들이 자신이 직접 다루는 구체적 실정법률의 해석, 적용에서 계기를 얻어 이를 성찰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구체에서 추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그 하나이고, 그 다른 방향은 법철학자들이 자신이 연구한 법인식과 법학

의 학문이론을 구체적 사례에서 검증하고 또 그로부터 법학의 학문이론과 법인식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내놓기 위해 '추상에서 구체로' 진행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방법론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법철학적 법학방법론'은 그것이 다루는 대상이 앞서 언급한 법철학의 대상 층위에서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법철학의 일 분과를 형성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21] 아마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 학계가 흔히 법학방법론을 법철학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수업의 주요내용으로 다루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22] 또한 이러한 경향은 영미법계에서 법적 추론(legal reasoning)이 빈번히 법철학의 한 내용으로 다루어진다는 확인을 통해 강화되고 있기도 하다.[23]

위의 도표를 보면 제일 아래 층위에 '법실무(Rechtspraxis)'가 놓여 있다. 그리고 이를 성찰의 대상으로 삼아 법적용과 해석을 검토, 체계화하고 이의 개선을 모색하고자 할 경우 이제 두 번째 층위에 놓인 '법도그마틱(Rechtsdogmatik)'의 영역이 문제되게 된다. 법도그마틱 영역은 법학자들이 주 행위자로 활동하게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실정법 영역이든지 간에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법의 해석, 적용 자체에 대한 메타적 성찰이 다시 가능함은 물론이다. 법의 적용이 무엇이고,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메타규칙이 있을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물음들이 성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위 '법학방법론(Juristische Methodenlehre)'의 영역이다. 법학방법론은 아직 법실무의 작업과정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 설령 실무가들이 통상의 사안에서는 자신이 투입하는 기교들을 의식하지

21) 우리 학계에서 '법철학적 법학방법론'이라는 표현을 구체화한 논문으로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 『법학』 제24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1면 이하.

22) 대표적으로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홍문사, 2006), 239면 이하.

23) 예컨대 F. Schauer/W. Sinnott-Armstrong, *The Philosophy of Law: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with commentary*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6), pp.117-218; G. C. Christie/ P. H. Martin, *Jurisprudence: Text and Readings on the Philosophy of Law* (Thomson/West, 1995), pp.931-1045.

못할지라도, 법실무가 법의 해석, 적용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상, 이를 성찰하여 보다 나은 방식으로 수행하고자 할 경우, 혹은 통상 자신이 수행하던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례들을 만날 경우, 해석과 적용의 규범과 실제를 학문적으로 성찰하고자 하는 법학방법론이 중요한 나침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학방법론 자체에 대한 이론적 성찰 역시 가능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법의 해석, 적용의 도구로 제시되는 여러 해석 방법론이나 법형성의 방법에 관한 여러 이론들은 상당부분 해당 법학방법론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학문이론적 입장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바로 법학방법론 자체에 대한 학문적 성찰로 직결될 수 있는 것이다.[24] 물론 층위 4에서 진행되는 성찰은 단지 바로 아래 층위에 놓인 법학방법론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그보다 아래 층위에 속하는, 각 실정법 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나 이론적 구상에 대한 성찰 역시 포괄할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층위 2나 층위 1에 속하는 법적 행위들이나 개념들도 자신의 성찰대상으로 포괄될 수 있는 것이다. 또 각 실정법 영역에서 법규와 판례의 이해를 위해 구축되는 체계 자체를 반성의 대상으로 삼는 이론들(예컨대, 헌법이론, 형법이론, 민법이론)[25]에 대한 성찰 역시 층위 4에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26] 동시에 헌법이론, 형법이론, 민법이론 등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개념틀-이는 아마도 법학의 구조적 표지들을 형성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에 대한 성찰 역시

24) 예컨대, H.-M. Pawlowski, *Einführung in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2. Aufl. (Heidelberg, 2000)은 가치철학과 평가법학에, J. Esser,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2. Aufl. (Kronberg Ts., 1972)는 해석학과 문제변증론에, R. Alexy,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 Die Theorie des rationalen Diskurses als Theorie der juristischen Begründung* (Frankfurt am Main, 1978)은 논의이론에 각각 기반하고 있다.

25) 이들은 그 성찰 층위의 측면에서 볼 때 법학방법론의 층위, 즉 제3층위에 접근한다고 보인다. 법학방법론이 구체적 실정법이 무엇이든 이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법해석, 적용에 대한 성찰을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법영역의 이론들은 각 실정법 영역 안에서 생성된 도그마틱 개념과 체계에 대한 반성을 자신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26) 헌법이론의 예로 Morlok, 위의 책을 참조하라.

가능할 것이다.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의 경우 그 해결의 방편으로 구체적 법도 그마틱뿐만 아니라 추상적 이론 역시 투입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언급이 판결문에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러한 상위 층위에 있어서의 성찰과 반성은 그 추상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결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무가들의 인식관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함의 역시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권리, 의무, 주관적 권리, 객관적 권리, 권리주체, 법인격, 인과관계, 법원칙 등 어떤 실정법이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법적 개념들에 대한 학문적 성찰 역시 층위 4에서의 반성내용에 포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소위 '법일반이론(allgemeine Rechtslehre)'의 표제 하에 다루어졌던 주제들이기도 하다.[27]

하지만 법학방법론 등 법인식에 대한 성찰, 권리/의무 등 법의 구조적 표지들에 대한 성찰은 더 나아가 법이 사회 속에서 수행하는 기능 등과 관련해서 외부적 시각을 고려하여 재차 반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사회학이나 인류학, 심리학 등 인접학문들의 시각을 내재화하여 법인식이나 여러 법개념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의 반성적 성찰을 수행한다면 이는 법체계 내의 인식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28] 위 도표는 이를 층위 5에 배치하고 있다. 물론 법체계 구성원들의 인식 지평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성적 목표가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등 해당 학문영역의 (법현상에 대한) 인식확대라는

27) 우리 학계에서는 현재 조명을 덜 받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아 법일반이론은 넓은 의미의 법철학의 한 내용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법일반이론과 — 주로 법이념론을 대상으로 하는 — 법윤리학(Rechtsethik) 중 어느 것을 더 법철학의 주요 내용으로 다룰 것인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을 거듭해 왔다. '법일반이론'의 연구영역은 흔히 '법이론'의 표제 하에 다루어지기도 한다. 양자의 개념정의와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Röhl/Röhl, *Allgemeine Rechtslehre*, 3. Aufl. (Köln, 2008), S. 6ff. 법이론의 영역이 역사적으로 '법일반이론'의 표제 하에 다루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는 카우프만, 위의 책, 60면. 20세기 초반 법일반이론의 주요저작으로는 E. R. Bierling, *Juristische Prinzipienlehre*, 5. Bände (Tübingen, 1917); Th. Sternberg, *Allgemeine Rechtslehre* (Leipzig, 1904); H. Nawiasky, Allgemeine Rechtslehre, 2. Aufl. (Einsiedeln [u.a.], 1948).

28) 그 한 예로서 N. Luhmann, *Das Recht der Gesellschaft*, 2. Aufl. (Frankfurt am Main, 1997); ders.,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Beiträge z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Frankfurt am Main, 1981).

목표 하에 수행된 까닭에, 그 학문 영역의 성과로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연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연구는 층위 5로서보다는 해당 학문영역의 학문성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이념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의 연구에서는 뚜렷이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많을 것이다.[29]

층위 6은 앞서의 층위 모두에 대해 철학적 측면에서의 반성을 시도하는 단위로 설정되고 있다. 층위 6이 -사회학이나 여타 인접학문 등 외적 관점을 내재화하여 법이라는 대상을 성찰하고자 하는- 층위 5보다 반드시 메타적 시각에 위치한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앞서의 층위들에서 정당성의 문제,

---

29) 이처럼 법사회학적 관점을 넓은 의미의 법적 성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철학과 법사회학의 상호배타적 범주구분은 오히려 기초법의 연구영역 해명에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물론 법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라는 법철학 개념규정에 있어서 철학함의 의미를 특정 학문분과의 학제적 범주에 맞추어 구상한다면 양자의 구분이 불가피하겠지만, 여러 사회이론이 그 자체 계몽(Aufklärung)이나 성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한, 법철학이 법에 대한 성찰을 위해 투입하는 철학적 방법론에 경우에 따라 사회학적 방법론 역시 포함시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각은 많은 법철학 수업들이 자신의 내용으로 루만이나 하버마스의 사회이론을 다루고 있는 데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이런 견지에서 법철학의 전통적 주제를 포괄하면서도 인식비판과 성찰적 계몽의 폭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사회학적 이론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법이론 개념이 주창되기도 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이론'이라는 개념이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이러한 시도는 넓은 의미의 법철학 개념에 포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것이 법철학 과목의 여타 기초법 과목들에 대한 '식민화'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기초법 분과 내 다양한 학문영역들의 상호중첩과 교차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학이나 심리학 등의 연구 성과들이 이미 철학적 연구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기초로 포괄되고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러 거대이론가들의 소속 학과, 혹은 소속 학문분야를 묻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현상과도 관련된다고 보인다. 물론 이것이 해당 학문분과가 고유하게 가지는 연구영역 역시 존재함을 간과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영역은 분명 존재한다. 예컨대, 법현상을 통계조사에 입각해 인과관계의 범주로 파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법사회학적 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본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학과들 간의 교차하는 영역 역시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기초법 학술단체 통합학술대회를 여는 것은 기초법 분과학문들의 상호의존과 중첩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이들 학문내용에 있어서의 상호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합리성의 문제, 논리의 문제 등 철학의 중심적인 물음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성찰된다면 이들 층위 역시 이미 층위 6의 영역을 암묵적으로 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층위 구분은 상당히 이념형적인 것이다. 많은 법철학 연구에서 위의 층위는 상당부분 서로 혼재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층위 구분에 대해 여러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법학의 대상영역과 성찰영역을 구조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층위 구분에 따른 법철학적 연구대상의 분류가 시사해 주는 것은 강의자가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수업 내용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법철학 교육의 대상 영역이 아래의 층위로 내려갈수록 실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결정대안에 대한 성찰이라는 차원에서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이다. 결정과 행위에 이미 성찰적 계기가 포함된다면 그 깊이와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법철학 교육의 대상 영역이 위의 층위로 올라갈수록 그 추상성이나 전문 이론적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는 법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라면 알아야할 내용들을 구성할 것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법학 교육이 '법학자 양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실무가 양성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그 교육내용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앞서 말한 것처럼-, 법철학 교육내용 역시 '법학자 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가 양성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학자 양성'도 그것이 '법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자양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법도그마틱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학자양성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법철학 교육내용의 구성에 있어 차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매번 강조했지만, 이것이 대상 학생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법을 철학적으로 반성, 성찰하는 역량을 학습시키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공통 내

용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다만, 그러한 핵심내용을 가르치는 방편에 있어서, 그리고 그 외 교육내용의 구성에 있어 조금씩의 방점 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을 말하고자 함일 뿐이다.

그렇다면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교수님들은 로스쿨에서 실제 법철학 교육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주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교수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주 교육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과연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교육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 역시 감지될 수 있는가? 본고는 다음 장에서 이 부분을 대략 10여개 학교 법철학 담당 교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은 설문응답을 기반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 내용구성의 현황 (설문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1) 로스쿨의 법철학 교육 내용 구성

필자는 설문에서 우선 법철학 수업내용으로 가능한 여러 보기들을 제시하고 이들 중 교수님들이 로스쿨에서 실제 법철학 수업의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계시는 주제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주시라고 요청 드렸다. 동시에 기존 법과대학 체제 하의 법철학 수업내용에 대한 질문 역시 포함시켰기에 양자의 비교,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주어진 예시로 든 것은 다음과 같다.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정의, 법적 안정성, 법과 자유, 법과 도덕, 법과

권리, 법과 인간, 자연법론,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해석학, 논의이론, 체계이론, 비판법학, 법학방법론(법해석+법형성), 논증 이론, 켈젠, 라드브루흐, 하트, 풀러, 드워킨, 알렉시, 국가의 정당성,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형벌이론, 동양법철학, 법과 여성, 법과 환경, 법과 정보, 정당한 전쟁론 등

기존 법과대학에서의 수업내용으로 체킹된 주제들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의 개념 9, 법의 효력 9, 법의 이념 9, 법과 정의 8, 법적 안정성 4, 법과 자유 5, 법과 도덕 9, 법과 권리 3, 법과 인간 1, 자연법론 9, 법실증주의 9, 법현실주의 4, 법해석학 4, 논의이론 2, 체계이론 0, 비판법학 2, 법학방법론(법해석+법형성) 5, 논증 이론 3, 켈젠 6, 라드브루흐 8, 하트 8, 풀러 6, 드워킨 7, 알렉시 2, 국가의 정당성 2,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4, 형벌이론 2, 동양법철학 1, 법과 여성 1, 법과 환경 1, 법과 정보 1, 정당한 전쟁론 0, 생명윤리 1

그에 비해서 로스쿨에서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

법의 개념 9→ 9, 법의 효력 9→ 7, 법의 이념 9→ 6, 법과 정의 8→ 6, 법적 안정성 4→ 3, 법과 자유 5→ 5, 법과 도덕 9→ 9, 법과 권리 3→ 5, 법과 인간 1→ 2, 자연법론 9 →8, 법실증주의 9→ 8, 법현실주의 4→ 3, 법해석학 4→ 4, 논의이론(Diskurstheorie) 2→ 3, 체계이론 0 →1, 비판법학 2→ 2, 법학방법론(법해석+법형성) 5→ 8, 논증 이론 3→ 2, 켈젠 6 → 4, 라드브루흐 8→ 6, 하트 8 →6, 풀러 6→ 4, 드워킨 7→ 6, 알렉시 2→ 2, 국가의 정당성 2→ 4,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4→ 4,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4→ 4, 형벌이론 2→ 2, 동양법철학 1→ 0, 법과 여성 1 →2, 법과 환경 1→ 0, 법과 정보 1→ 0, 정당한 전쟁론 0→ 0, 인간존엄 0→ 2, 인격성의 원리 0→ 1, 자기결정권 0 →1생명윤리 1→ 0 등

몇 가지 변화가 확인됨을 알 수 있다. 여러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각 주제들의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그럼에도 법학방법론의 비중은 예외적으로 크게 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설문에 응답해 주신 대부분의 교수님들(88%)께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수업내용의 변화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의 결과가 그러한 변화를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추가적으로 왜 그러한 교육내용 상의 변화를 주셨는지에 대한 물음을 설문에 포함시켰는데 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A교수: 수업에서 다루는 주제의 수를 줄였으며, 그 대신 난이도는 높였습니다. 수업시간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가급적 밑바닥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B교수: 법철학 각 주제별 내용의 강의식 소개, 판례와 관련된 구체적 문제제기,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했음.

C교수: 사례분석을 수반하고 설명하여 법실무에서의 사고 및 논증능력과의 연관성 강조

D교수: 가급적 부담을 적게 주고, 법철학에 친숙함을 느끼기 위함

E교수: 법해석 부분을 강화하여 2학년 1학기에 개설된 '법논증학'과 연계

F교수: 법철학류의 기초법학 과목이 많아짐으로써, 각각의 주제를 보다 판례와 연결지어 설명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동안 더 쉽게 강의할 수 있게 되었음

G교수: 종래의 추상적 이론 중심은 크게 어필하지 못함//법철학과 실정법학을 구체적으로 연관시키기 위해//실정법학의 기본원리를 법철학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문제 중심적인, 사례 중심적인 법철학 수업을 위해

F교수: 추상적 논의보다 가능한 한 현실적 사례들이나 사회적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 중심의 논의를 끌어가려 하다 보니 수업내용의 변화가 있었고, 특히 법학방법론 등의 영역에 더 많은 시간 투자가 이루어짐.

교수님들의 답변을 통해 확인되는 점은 교수님들께서 보다 적은 수의 주제를 보다 깊이 그리고 철저히 토론하기 위해 주제수를 줄인 측면도 있지만, 무

엇보다 법철학 주제들을 사례들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고 실정법적 주제들과의 관련 속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법실무에서의 사고 및 논증능력을 키우기 위해' 법철학 수업내용의 변경을 시도하신 측면이 크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로스쿨이 실무가 양성을 위한 제도이며, 법철학 역시 그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점이 은연중 확인된다. 아마도 그 결과가 법철학 교육 내용에 있어서 '법학방법론' 등의 강화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거의 33%의 증가율).

하지만 모든 교수님들께서 법철학 수업의 목표가 실무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의 성찰능력향상이라고 보신 것은 아니다.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법철학의 기본목표가 실무에서의 성찰능력향상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법의 제반 현상에 대한 일반적 성찰능력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기도 했고, 다만 -앞으로 교육형식에 관한 챕터에서도 다루겠지만- 바뀐 교육시스템 안에서 주제수 축소를 통해 법철학 주제들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식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실질화된 수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수업내용 변경의 이유였다는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다. 즉, 교육 내용 구성과 주요 교육대상자 설정에 있어 교수님들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이 확인된 것인데, 로스쿨 목적을 실무가 양성으로 보고 이들의 구체적 상황에서의 성찰능력 배양에 초점을 두어 교육내용을 구성하신 분들이 계신 반면, 로스쿨 목적은 그렇더라도 법철학 수업은 그러한 실무능력 배양에 목적을 맞추기보다 법학 일반을 보다 성찰적으로 되돌아 볼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두어야 한다고 보고, 그 결과 여러 주제들을 보다 철저히, 그리고 토론식으로 다룰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신 분들 역시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법철학 교육에 있어서 사례의 활용을 어느 정도나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에 관한 설문 응답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 66퍼센트 이상의 교수님께서 적극적 긍정의 답변을, 22퍼센트 정도의 교수님께서 그 필수성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 답변을 해 주심이 확인되는데, 법철학 교육을 사례 중심적으로 할수록 앞서 분류한 법철학의 대상영역층위에서 아랫부분을 차

지하는 내용들이 하나라도 더 많이 교육내용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30]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바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과 도덕, 법과 정의, 그리고 이들 주제에 관해 대표적 견해를 전개하는 학자들의 이론에 대한 소개가 수업의 중추를 이루되, (수업내용의 변화를 모색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경우) 법학방법론 쪽에 조금 더 많은 시간할애가 이루어지는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무와 법도그마틱 일반의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적 법철학의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법의 해석/적용, 법의 형성 등에 대한 보다 집중적 교육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보다 강조되고 힘을 얻어온 법철학계 저간의 흐름과 관련된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학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로스쿨 체제하에서 구체적 법적 상황의 해결과 그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법철학이 되지 못할 시 법철학이라는 학문분과가 고사될 수 있음을 지적한 몇몇 교수님의 문제의식에 대한 일정한 공명이 있지 않나 싶다.[31]

여기에서 다만 두 가지 점은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법학방법론 자체의 경우 정의에 따라서 그것이 법철학과 구분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법학방법론 과목이 법철학과는 구별된 독자적 수업형식으로 제공된다.[32] 법학방법론의 주제들을 법철학적 방식으로 다룰 때 비로소 법학방법론

30) 물론 '법학방법론'을 제외하고는 예시된 주제들의 체킹빈도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경향이 확인되기 때문에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변화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의 개념이나 법의 효력과 같은 추상적 주제라도 사례와 밀접히 관련가능한 부분과 해당 주제에 대한 전문 철학적 성찰에 대한 부분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교수님들이 실무가 중심적으로 법철학 교육을 꾸려 나가실 경우, 앞서 체킹빈도수에 큰 변화가 없는 주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제 수업운용은 보다 현실관련적이고 사례관련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1) 예컨대, 김영환, 「한국법철학회 원로와의 대담」, 한국법철학회 편, 『한국 현대법철학의 형성과 전개』(세창출판사, 2010), 389면; 오세혁, 「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한국법철학회 편, 같은 책, 268면.

32) 법학방법론, 법이론, 법철학, 법사상사, 법사회학 등의 개념규정과 상호관계에 대한 해명이

은 법철학의 내용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법학방법론의 주요 개념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교육상황이라면 수업 중에 법학방법론의 법철학적 성찰이 어느 정도까지나 가능할 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법학방법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법철학의 교육내용 구성에 있어서 '법철학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과 관련되는 질문이라고 하겠다. 법학방법론의 중요성이 기본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간 제대로 다루지 못하였고, 또 로스쿨 교육편제에서 역시 독립적 과목으로 구성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33], 법철학 수업에서라도 법학방법론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학생들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법철학 과목 안에서 법학방법론이 얼마만큼의 비중과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초법 교수님들 간에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 보아야할 대상이 아닌가 싶다.

둘째로, 법학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어느 정도 수강주체와 수강목표의 변화가 이루어진 결과, 실무가 양성이라는 로스쿨 목적에 상응하여 법철학 교육내용구성에도 실제 사례들에 있어서의 반성능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중요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물음 중 하나는 실무가로서의 자격마련이라는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학문후속세대들의 경우' 자신의 목적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 지이다. 쉽게 말해서 학문으로서 법(철)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로스쿨의 교육내용은 불충분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물음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설문에 응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독일의 경우 수업편제상으로는 '법철학', '법학방법론', '법사회학'이 독자적 과목으로 가르쳐 지고 있다. 법철학을 한 과목으로 가르칠 지 아니면 복수의 과목으로 나누어 가르칠 지는 학교에 따라, 그리고 담당 교수에 따라 달리 결정되고 있다.

33) 로스쿨 전환 전 '법학방법론'이 개설된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로스쿨로의 전환과 함께 '법학방법론' 과목을 독자적으로 개설한 학교의 숫자가 약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된 법철학 교육 내용 보충의 필요성

설문은 교수님들께 법철학을 학문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 즉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현재의 법철학 수업내용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추가적 교육내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관해 여쭤보았다. 이에 대해 77퍼센트 이상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학문후속세대를 위해서는 추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셨다. 추가적 교육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원전텍스트의 독해에 기반을 둔 세미나, 법철학의 이론적 기반을 이루는 다양한 철학적 내용에 대한 철저한 학습, 논문작성역량강화 등을 지적해 주셨다. 그리고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을 위해 로스쿨 체제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무엇보다 지금까지 배출된 신진교수들의 학문적 수준 이상의 역량을 갖춘 학자들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에 관한 질문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회의적(44%), 혹은 유보적 태도(44%)를 보여주셨고, 단지 11퍼센트의 교수님들만 굳이 나빠질 이유는 없다는 대답을 해주셨다.

현재까지는 아직 로스쿨 1기 졸업생들도 배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현재의 교수님들을 대체할 학문후속세대에 관한 고민이 구체화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긴 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로스쿨 졸업자들 중에 교수직을 맡아야 할 이들이 배출되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기 힘들 것이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미국 6,70년대처럼 법학전문석사학위 이외에 별도의 학위 없이도 자신이 쓴 소논문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학문적 역량을 심사받고 그에 기초해 교수직을 넘겨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반면, 학자로서의 자격획득은 독자적 학위논문의 제출을 전제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를 위한 독자적 학위과정의 이수가 요구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로스쿨들에서 점차 전문학술박사과정의 마

련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대게 후자의 방식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듯하다. 다만 전문학술박사과정이 마련되더라도 현재처럼 세미나참여와 학위논문제출이 의무화된 일반석사과정의 이수가 요구되지 않고, 로스쿨의 전문석사과정 졸업 후 바로 전문학술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일 것이기 때문에 기존 교육체제(일반대학원 석, 박사 과정)가 제공했던 정도의 학문적 수련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음도 사실이다.[34] 더군다나 학술박사과정의 필수이수기간이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저간의 인식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전문학술박사과정이 역량 있는 학자 양성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판 역시 있을 수 있다. 설문응답이 보여주는 바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란 전문학술박사과정의 안착 여부 등 여타 변수에 의존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44퍼센트), 해당 과정이 충분한 학문능력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계신다(66퍼센트)는 점이다.

전문학술박사제도가 법철학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 대답을 하긴 일단 힘들 것 같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80, 90년대를 지나면서 많은 법학교수들이 전문 LL.M.과정과 S.J.D.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데다가[35]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정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학술적 논문들을 쓰는 훈련을 스스로 해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공동체에서 요구하는 '학문함'에 대한 역량을 갖출 것을 필

34) 물론 현재 여러 학교의 경우 '전문학술박사과정'과 '일반학술박사과정'이 병존하여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로스쿨 졸업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일반학술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될지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현시점 정확하기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를 보건데,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주로 전문학술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35) 이러한 추세는 미국 로스쿨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가능하다. 연세가 있는 교수들의 경우 J.D.만 있는 경우도 꽤 있으나 젊은 세대의 교수들일 수록 J.D. 외에 LL.M.과 S.J.D.의 취득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요로 한다. 이는 논문 쓰는 법, 비판적으로 텍스트 읽는 법, 법철학 전문지식에 대한 학습, 추상적 사고능력 배양, 외국어 기본 원전텍스트 해독능력배양, 수업 중에 깊이 다루지 못했거나 배제되었던 주제들에 대한 심화학습 등 학부나 로스쿨의 법철학 수업에서 배우기 힘든 내용들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한다.[36] 어떤 것들이 적절한 학문적 주제가 되고, 어떤 논거들이 설득력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감각 역시 학문공동체 속에서의 수련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한에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학문후속세대의 배출을 걱정하는 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37]

다만, 이미 많은 나이를 가지고 실무에서 충분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박사과정에서 얼마만큼의 학문적 투신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사과정의 커리큘럼 구성에 대한 추가적 고민 역시 필요하지 않나 싶다. 또 하나 법철학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독자적 학위과정구성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부분은 일반 실정법 과목의 경우 대학원에서, 그리고 직업실무에서 법적 사례를 매개로 계속된 학습과 수련이 있게 되지만 법철학 등 기초법 과목의 경우 그러한 과정을 상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자적 공부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前任 법학교수회장이 일전에 기초법 과정의 경우 학자가 되고자 하는 이라면 박

36) 이는 보충질문 2에 대한 교수님들의 답변에서도 확인된다.

37)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독일의 제도현실 역시 우리나라에 있어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독자적 학위과정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인다. 비록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에선 국가시험이 대학의 디플롬(Diplom) 과정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시험과 결부된 우리의 로스쿨 과정과 일정부분 유사점을 보인다. 하지만 독일은 국가시험 합격만으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해 독자적인 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적인 석사과정 이수 요구 없이 좋은 국가시험 성적이 있는 한 입학이 허용되는 '박사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교수자격논문 제출과정'이 그 예이다.

사과정의 이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한 데 대한 한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38]

보론)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 형식구성의 현황(설문결과의 분석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본고는 법철학 교육의 가능한 내용을 주요 수강주체와 교육목적 설정에 따라 유형화해 본 다음, 로스쿨에서 실제 어떠한 내용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또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해서 어떠한 법철학 수업의 추가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지를 검토해 보았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본고가 지금까지 주로 법철학 교육내용에 대해서만 다루어왔다는 사실이다. '바뀐 교육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반성'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또 고민해 보아야 할 내용 중 하나는 바로 '법철학의 교육형식'에 관한 부분이다. 어떠한 법철학 교육형식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일수 없다. 이는 그와 관련된 여러 물음들과의 대결을 동시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철학의 교육내용에 따른, 가장 합당한 교육방식이 무엇일지'가 고민되어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법철학의 교육내용은 법철학의 기본지식의 학습 외에 '법철학함'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포함한다. 원래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법철학 교육형식에 대한 물음을 두 가지 차원—즉, '법철학 기본지식의 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의 차원과 '법철학함의 성찰역량의 배양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지'의 차원—

38) 성낙인, 「로스쿨시대의 기초법학」, 『법률저널』(2009. 12. 31); 본래 본고는 '학문후속세대의 양성과 관련된 법철학 교육 내용 보충의 필요성'에 관한 절 다음에 '비(非)로스쿨 법과대학에서의 법철학 교육내용 구성'에 관한 절을 싣고 있었다. 이는 법학교육체제의 변화 속에서 법철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25개 로스쿨에 한정하여 분석하지 않고 그 외 수많은 법과대학에서의 법철학 교육 역시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한 문제의식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정된 지면 관계상 불가피하게 해당 부분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를 싣고 있는 '학술대회 자료집(2010년 12월 17일)'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이다.

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살펴본 제법 긴 장을 포함하고 있었다.[39] 하지만 한정된 지면관계상 아쉽게도 이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추가적 논문게제를 통해 보완할 것이다[40]. 하지만 적절한 법철학 교육형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부분은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로스쿨에서 법철학 교육이 어떠한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생략한다면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현황 분석이라는 본고의 목적달성에 상당한 미흡함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본고의 밑바탕이 된 설문조사가 법철학 교육형식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본고는 보론의 형식을 빌려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 교육이 어떠한 형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현황을 —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 간단히 분석, 소개하고자 한다.

---

39) 특히 본고는 짧게나마 '법지식의 거대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도그마틱 지식의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강의식 교육이 동원될 수밖에 없으며, 로스쿨 도입과 함께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영미 로스쿨의 사례식 법학교육방식은 학습해야 할 법지식의 양적 차이나 구축된 도그마틱 법체계의 추상성의 차이로 말미암아 대륙법 체계의 법지식 전달을 위한 방법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선입견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였었다. 검토 결과 사례식 교육방법은 반드시 영미법 국가에만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여전히 교육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중요한 이유로 대륙법계의 법도그마틱 지식 역시 그 형성과 계속발전의 근저에 구체적 사안에서의 문제해결력 향상이라는 목적이 놓여 있음을 들었다. 유사한 분석으로 양천수, 앞의 논문, 8면, 13면을 참조하라.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과 달리 — 대표적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법학교육방식, 특히 강의와 동시에 진행되는 소규모학습집단에서의 사례중심교육의 존재와 그 광범위한 개설현실을 통해 지지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법도그마틱에 있어서 사례식 교육이 효율적일 수 있음'이 과연 '법철학 일반지식의 전달'에 있어서도 여전히 타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기존의 추상적 법철학 이론틀에 대한 반성적 재구성이 빈번히 구체적 법적 문제에 대한 반성 중에 이루어져 왔음을 근거로(예컨대, 법개념론의 발전과 재구성에 영향을 미친 '악의의 밀고자' 사건이나 '도망 노예' 사건, '동독장벽경비판례' 등) 이를 긍정하였었다.

40) 다만, 논의의 완결적 검토를 위해 해당 논문 부분에 관심 있으신 독자는 본고가 포괄적 형태로 발표된 '학술대회 자료집'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법철학 수업 형식은 '지식습득이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교육방법론적 질문에 대해 교육주체가 어떤 응답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법철학의 가능한 '수강주체'를 누구로 잡고 '법철학 수업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이들 물음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수업방식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전문 법철학 지식의 내용적 확충이라는 면에 중점을 두면 둘수록 강의식 교육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에 반해 각 개 수강자들이 자신의 지식망에서 법철학 지식의 적절한 위치를 자율적으로 찾아나가고 법철학 지식을 기존의 다른 지식들과 보다 정합적으로 연결, 확충시킬 수 있는 역량의 배양에 조금 더 큰 비중을 두면 둘수록 그만큼 질의/응답식, 토론식, 사례식 교육방식의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법철학의 가능한 수강주체를 법실무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로 잡을수록 실제 사례들을 매개로 법철학적 반성을 수행하고 이를 자신의 결정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게 훈련시킬 수 있는 수업형식을 강화하게 될 것인 반면, 수강주체를 전문적 학문연구자로 설정할수록 전문 법철학 지식을 확충하고, 그에 합당한 학문역량을 배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형식, 즉 세미나, 발표/토론, 페이퍼 작성, 원전 독해 등의 형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로스쿨 체제 하에서 교수님들에 의해 실제 채택되고 있는 교육형식 현황'에 관한 설문결과분석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88퍼센트의 교수님들께서 크든, 작든 법철학 교육형식의 변화를 꾀하고 계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점은 여러 수업형식들 중 '교수주도 토론식'의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약 50%→77%). 퍼센티지를 보면 법과대학에서의 경우 '순수 강의식'의 비율이 44퍼센트에 이르고 있었으나 로스쿨의 경우 '강의식' 수업의 비율이 오직 다른 수업형태와 결합한 형태로만 존재할 정도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수님들께서 로스쿨을 기본적으로 법실무가 양성기관으로 설정하고 실무에서의 반성능력 함양을 도와줄 수 있는 수업형식을 모색한 결과가 아닐까 추정해 본다. 즉, '법철학 관련 사례 고찰'이 주요한 수업도구로 활용됨으로써 '교수주도식 토론'의 비중이 불가피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41] 또한 '발표'나 '세미나식 수업'의 비중도 약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33퍼센트). 그리고 특

징적인 것 중 하나는 교수님들께서 보다 충분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위해 로스쿨 수업의 교육내용을 조금씩 줄이고 계시다는 점이다. 이는 수업내용과 수업형식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유의할 대목 중 하나는 실무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主 수강주체로 설정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들을 염두에 둔 수업내용과 수업형식의 선택이 이루어진 결과, 학문후속세대라면 응당 공부해야 할 교육내용과 그에 필요한 교육형식 채택에 있어서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 교수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점이다. 학문후속세대에게는 —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 그들의 목표에 적합한 교육형식(예컨대, 세미나, 원전강독, 페이퍼 연습 등)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위 II. 4. 2) 참조).

지금까지 본고는 법철학의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육형식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유의해야할 부분 중 하나는 교육내용과 형식이란 항상 특정한 '교육제도'와 결부되어 그 안에서 수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아무리 수강자에 적합한 보다 양질의 법철학(기초법)교육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제도적 여건이 법철학에 대한 관심과 법철학 수강의 가능성을 봉쇄해 버린다고 한다면 법철학 수업은 그 최선의 형태로 제공되기 힘들 것이다. 바로 여기에 지금부터 법철학 교육의 제도적 여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가 놓여 있다. 즉, —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이 법철학이나 기초법 과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수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 도입 과정에서 '고시 공부에만 함몰되지 않고 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초영역, 혹은 전문영역에 대한 공부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자는

41) 물론 '사례 활용에 기반을 둔 수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역시 22퍼센트까지 나타남을 볼 때 이것이 완전히 일반화할 수 있는 명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추세가 있다는 점 정도에 대한 동의는 가능할 것이다.

목적'이 로스쿨 도입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표방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이에 대한 검토는 법철학이나 기초법 과목의 교육현실에 대한 고민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로스쿨 체제가 전반적으로 그 도입의도를 잘 구체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로스쿨 체제 하 법철학 교육의 제도적 여건

어떤 내용의 법철학 수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는 단지 이상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다. 수업 내용과 수업형식은 불가피하게 법철학 수업이 놓인 제도적 여건과 결부되지 않을 수 없다. 수업 내용의 구성은 어떤 학생들이 듣는지, 그리고 이들이 수업을 이해할만한 충분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열심히 들을 용의가 되어 있는지 등에 좌우된다. 수업형식의 다변화 역시 학생들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는지,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수준이 되는지 등에 영향을 받는다. 즉, 수업형식과 수업내용은 항상 수업의 제도적 조건에 결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로스쿨 체제는 실무정향적 교육의 수행뿐만 아니라 몇몇 시험 과목에 함몰되지 않고 여러 다양한 기초 과목이나 전문 과목에도 관심을 투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의 마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도 시도된 측면이 있다.[42] 법과대학 체제에서는 많은 이들이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위해 공부하고, 학교 수업은 사법시험준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교

42) 이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강조는 필자).

육을 정상화하고 과도한 고시준비노력의 낭비를 줄이며, 학교에서 진정 필요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목적에서 로스쿨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많은 기초법 교수님들이 교육체제의 변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많은 우려 역시 존재했다. 경우에 따라 기초법 과목들이 고사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그것이다. 실무정향적 공부 속에서 기초이론과목들은 주변부로 몰릴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우선, 애초에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학생들이 기초과목이나 전문과목 등 다양한 시험 외 과목들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자는 목표 역시 기대했던 정도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에 대한 압박감이 여러 다양한 기초, 전문과목들에 대한 관심을 모두 빨아들이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방 로스쿨의 현황에 기초하여 보건데 — 현재 로스쿨의 상황은 과거 학교 외에서의 사법시험 준비에의 올인이라고 하는 모습이 학교 내로 이전되어 그대로 지속, 혹은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법과대학 4년의 교육기간이 로스쿨 3년으로 축소되었음에도 — 변호사 시험과목들의 구성으로 보건데 —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필수교과목들의 숫자는 실질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객관식, 서술형, 기록형을 망라하고 있으며, 한 주에 이 모든 시험을 과락 없이 합격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3년 후의 이 시험에,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합격률도 알 수 없는 이 시험에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느끼며,[43] 시험 대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총력투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은 또한 수업 외로 매일매일 학원

43) 지난해 말 학생들의 자퇴서 파동, 학사일정거부 등의 홍역 끝에 현재 1기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만 '정원 대비 75%'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2기 이후로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경우 변호사협회의 그간의 태도나 "로스쿨제도의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새로이 선출된 변호사협회장의 신임일성을 보건데 빠른 시간 내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주요과목의 수험능력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자기 진도를 빼야하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수업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중요과목 수업들은 듣기는 하되, 부담 가는 교수님 수업은 피하고, 여타 과목들의 경우는 학점 이수가 편안한 과목을 택하거나 아니면 골고루 흩어져 절대평가과목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다. 특히,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일 경우 자기 공부의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수강신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일견 필수과목이 줄고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전환된 이상 기초법 과목들에 대한 수강 가능성 역시 예전보다 높아진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불가피하게 시험 준비를 위해 들어야 하는 '외견상' 선택과목들을 제외한다면, 실제 학생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은 학점 수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로 법철학 과목의 수강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강상황의 악화는 불가피하게 수업내용의 구성과 형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선,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수업부담의 한계 때문에 수업형식에 있어 타이트한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거나 발표 준비, 텍스트 읽어오게 하기 등을 요구하기가 매우 힘든 형편이다. 수업준비를 충분히 해 오게 하거나 과제물들을 부과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업 시간 안에 모든 주제들을 교육시키려면 아무래도 교수의 '원맨쇼'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그에 입각해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교수의 부담이 훨씬 커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준비 없이도 교수의 구상에 잘 따라오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부족한 수업준비는 이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게 한다. 이는 불가피하게 수업내용구성에도 영향을 가져온다. 사전준비가 없이도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의 구체적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오고 사전고민이 있어야 풀어갈 수 있는 주제들은 채택되기 힘들다. 수업 내용도 상당히 줄이고 난이도 역시 낮출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의 제도적 상황은 -예외적 경우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러한 흐름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나 싶다. 설문결과는 다음의 사실을 확인해 준다.

우선 법과대학 체제에서와 비교해 법철학 수강학생의 학년 정원당 퍼센티지는 대체로 줄었음이 확인된다.[44]

A학교: 48%→15%

B학교: 21%→12%

C학교: 21%→50%(선택적 필수지정학교)

D학교: 20%→15%

E학교: 70%→14%

F학교: 60% 이상[45]→15%

G학교: 50%→70%

H학교: 23%→13%

다음으로,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남는 학점 수를 이것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업 수로 바꾼 다음 이에 학생정원을 곱하여 필수과목 외 선택과목들의 숫자로 나누어 보면, 법철학 과목 하나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학생 수가 나오는데 (몇몇 예외적 학교를 제외하면) 그 숫자의 학년정원대비 퍼센티지가 법과대학 당시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46]

---

44) 물론 한 두 학교의 예외적인 경우도 발견된다. 하지만 이 중 한 학교가 법철학을 '선택적 필수'로 지정한 학교임을 고려한다면, 그리고 다른 한 학교의 경우 높은 법철학 수강율과 달리 법사상사 수업의 수강률은 매우 낮음을 고려한다면 일반화하기 힘든 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45) 이 학교의 경우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부 학생 외에 자율전공 학생들의 법철학 수강률이 높아 정확한 비율을 산정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46) 예시 학교의 숫자가 작은 것은 설문에 응해 주신 교수님들이 이 통계를 처리할 만큼 구체적 정보를 주시지 못한데 기인한다. A학교의 경우 해당비율이 예외적으로 늘고 있으나 실제 수

A학교: 40%→50%

B학교: 86%→60%

C학교: 70%→21%

선택과목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실제 듣지 않을 수 없는 외견상 선택과목'들의 존재가 다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많은 학교들에서 학생들이 선택과목들을 절대평가과목으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 수강인원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위의 비율이 실제 더 낮아지는 것을 막는 우호적(?) 요소로 기능할 것이다.[47] 학생들이 학점을 위해 수강인원의 전략적 분산을 시도하는 이러한 현상을 좋게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기초법 과목 등 여러 소수과목들이 폐강되는 상황을 막는 역할은 해주고 있는 듯 보인다.

교수님들께서 적어주신 법철학 과목 수강인원을 보면 통상 13퍼센트에서 18퍼센트를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평균인 15퍼센트가 120명 학교의 경우 18명 정도로 나타남에 비해서 40명 학교의 경우 6명으로 나타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퍼센티지이더라도 소규모 정원을 가진 학교의 경우 법철학 교수님의 위협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77퍼센트의 교수님들께서 법철학 교육의 제도적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답하신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설문응답을 해 주신 10개 학교 중 1개의 학교에서 '선택적 필수제도'가 채택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이 학교 법철학 수업은 정원대비 50퍼센트의 수강률을 보여주고 있다. 기초법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필수과목화'나 '선택적 필수과목화'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학교의 교과과정

강학생의 비율은 줄고 있음을 부기하고자 한다. 그 정확한 이유는 해당학교의 여러 제도적 상황에 대한 추가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듯 보인다.

47) 하지만 현재 로스쿨 협의회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일적 상대평가제는 절대평가과목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마저 낮출 듯 보인다.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하기란 매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 등 기초법 교수님들은 자신의 과목에 수업진행이 가능할 정도 이상의 수강자가 있을지 매 학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48] 이는 수업내용과 형식의 구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앞서도 이야기 했듯이, 로스쿨 학생들은 부담 주는 과목을 피하고 자신의 절대적 공부시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 때문에 수강인원 확보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교수들의 경우 수업내용과 수업형식의 구성에 있어 다른 선택과목들에서 통상 부과하는 이상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주기 힘들게 되어 있다. 이는 '법철학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은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66퍼센트의 교수님들이 '다른 과목이 주는 부담정도만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셨고 22퍼센트의 교수님은 '실제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답해 주셨다. 물론 이는 교수님 나름의 소신과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텍스트를 읽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려고 하며, 로스쿨인 이상 이 정도의 부담은 학생들이 감내해야 한다고 본다'에 체크해 주신 분도 일부 계셨다(11퍼센트).[49]

로스쿨에서 법철학 수업이 놓여 있는 제도적 상황은 또한 '수강생들이 법철학 수업을 선택하는 주요 동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교수님들의 응답에서도 확인된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수강신청경향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계실 교수님들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 대게

48) 물론 여기서 수업진행이 가능한 정도의 수강인원이란 꼭 폐강이 안 될 수 있는 인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나 토론 등 교수가 계획했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강인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9) 위의 분석이나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이 반드시 로스쿨 제도 자체의 문제라고 해석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한정된 기간 하에 과도한 공부내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현행 법령상의) 변호사시험제도, 특히 그 출제나 채점, 합격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초법 과목들의 제도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부담 없는 과목의 선택'이 주요한 동인의 하나일 것이라고 체크해 주셨다(55%). '법철학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주요한 동인일 것이라고 지적해 주신 교수님은 33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교수님들의 추정에 기반을 둔 답변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실제 법철학 선택 동인과는 차이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교수님들께서 어느 정도 학생들과의 소통에 기반을 두어, 그리고 교육과정을 둘러싼, 다른 동료교수님들과의 대화에 의거해 답신을 해 주셨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답신내용이 학생들의 법철학과목선택의 실제 동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흐름파악은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애초 로스쿨 교육과정 마련 시에 선택과목의 수를 늘려 놓은 이유 중 하나는 수강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시킴으로써 개개인 나름의 관심과목을 듣고 전문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 혹은 시험과목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관심 있는 기초과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최소한 현재 드러나는 수강선택의 흐름과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그러한 목적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않나 싶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3년의 교육과정 중에 주요 법학과목을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로스쿨의 제도적 조건에서 가장 큰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로스쿨 도입 시에 그 도입필요성에 대한 이유 중 하나로 '다양한 학문분과에서 학사학위를 이수한 이들이 법학을 공부하게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문화가 가능하게 되어 법전문가들의 다채로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이야기된 바 있었다. 유사한 논의선상에서 법철학 수업에 철학이나 인문학 등을 공부한 사람들이 유입됨으로써 미국에서처럼 법철학 전공자들의 전문화가 심화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기대가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교수님들께 수강자들의 출신학과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의미한 분석토대를 얻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법철학 수강자들 중에 법학과 출신과 비법학과 출신간의 비율이 어떠한지'에 대한 교수님들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그리 눈에 띌만한 흐름이 확인되는 것 같

지는 않다. 학교에 따라 법학과 출신학생들의 비율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비법학과 출신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경우도 있는 등 명확한 흐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철학이나 인문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법철학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 중 법철학에 흥미를 가지는 학생들 일부가 선택적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 같다. 시험공부, 학과공부 등 여러 부담을 소화해 내야 하는 로스쿨의 여러 제도적 조건 속에서 꼭 '흥미'와 '관심'이 일차적 수강신청 동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교수님들이 생각하시는 '現 로스쿨에서의 실제 법철학 수업수준', 그리고 '수업참여자들의 질과 적극적 수업참여정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 바로 '과거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철학을 전공하여 배출된 신진학자들의 수준 이상의 학자들을 현재의 로스쿨체제가 배출할 수 있겠는지'의 물음에 대한 교수님들의 응답에서 발견된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응답들이 조금 분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자 배출에 있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응답이 11퍼센트를 차지한 반면, '과거 수준 이상의 신진학자를 배출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적 공부가 필요할 것'이라는 응답이 44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전문학술박사과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하에 달려 있다'라는 응답 역시 4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보인다. '전문학술박사과정이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겠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22퍼센트의 교수님이 긍정적 답변을, 44퍼센트의 교수님이 부정적 답변을, 역시 44퍼센트의 교수님이 유보적 답변을 해 주셨다. 로스쿨에서 나타나는 '법철학에 대한 학생들의 미흡한 관심'이, 전문학술박사과정의 마련으로 의도하는 '법철학 전공자들의 풀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었다.

교수님들 중에는 "경우에 따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 오히려 법철학에 진지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단지 법철학 수강자들의 절대 숫자로 현재 법철학 수업의 제도적 여건을 따질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신 분

도 계셨다. 그리고 "법철학에 관심 있는 일부 학생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학교로 학위취득을 위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로스쿨 체제가 법철학에 진짜 관심이 있어 전공으로 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예전과 달리 서울 몇 개 큰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로스쿨에서도 확보할 수 있음으로 해서 법철학 전공자들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 역시 되새겨볼만 하다. 다만, 개원 후 4학기가 지난 현 시점, 학생들에게 1년 후 변호사 시험이라는 너무도 큰 과제가 놓여 있고 또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과목들이 너무 많은 까닭에 학생들이 법철학과 같은 非시험 과목들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수강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제도적 여건상 매우 어려울 것 같다는 확인 정도는 분명히 가능해 보인다.

Ⅳ. 법철학 교육의 개선을 위한 방안

그렇다면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 과목이 놓인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본고는 이를 이상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이상적 차원에서의 제도개선방안

이상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변호사 시험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시험제도를 개편하여 로스쿨의 암묵적 고시학원화가 해소되는 길이다.[50]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선택과목의 숫자가 늘었을지라도 실질적으

50) 현재의 변호사 시험 안에 따를 경우 불가피하게 로스쿨의 법학 교육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글로 양천수, 앞의 논문, 82면 이하를 참조하라.

로는 변호사 시험 때문에 불가피하게 듣지 않을 수 없는 외관상 선택과목이 존재해 법철학 수강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 과목에 대한 수강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학교육제도와 법률가 배출방안의 전체 틀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 법철학 교수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법철학 교수들이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 과목이 놓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제 요구해 볼만한 제도적 방안들은 없을 것인가?

법철학 과목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우선적 문제 중 하나가 '적절한 수업운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강인원확보'라고 보았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아마도 법철학을 '(선택적) 필수과목화'하는 것일 것이다. 이 방안은 이미 한두 개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택적) 필수화할 경우 법철학 수강생의 비율은 단순선택과목일 때보다 월등히 높아짐을 해당 학교 교수님의 설문응답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실제 관철시키기에는 현실의 벽이 꽤 높음을 인정하지 않을 없을 것 같다. 로스쿨 교과과정편성 시에, 필수과목의 수를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하는 의도에서 — 종전에 필수과목이었던 — 많은 중요과목들이 선택과목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철학의 필수과목화를 주장할 경우 여타 선택과목 교수님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우려 역시 높다. 물론 로스쿨의 도입의도에 몇몇 실정법 과목 외에 이들을 아래에서 떠받히고 있는 여러 기초법 과목들에의 관심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측면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애초의 문제의식, 그리고 현재 법철학 과목이 처해 있는 악조건을 여타 교수님들께 적절히 환기시킨다면 교수님들의 암묵적 동의가 마련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이러한 가운데 법철학 과목이 직면한 어려움 극복의 방안으로 언급되는 또

다른 안은 '법철학 과목의 변호사 시험과목에의 편입'이다. 변호사 시험과목에 법철학 과목이 들어가면 '시험과목으로서의 상징성' 때문에 5, 6학기에 개설된 법철학 수업이 여타 중요시험과목 대비라는 명목 하에 파행 운영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시험과목으로서의 법철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환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그 근저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견해 역시 존재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관심환기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만으로는 법철학 과목의 어려움 극복에로 실제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사석에서 최봉철 법철학회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기존 사법시험 1차 응시자 중 법철학 과목을 선택한 사람들은 2-3만 명 중 대략 2-30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세법 다음으로 적은 숫자로 굉장히 미소한 비율이라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철학과목이 설령 변호사시험과목에 포함된다고 할지라도 로스쿨 학생들 중 법철학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할 이들의 비율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설령 약간의 비율 상승이 있더라도 이것이 무언가 기대할만한 수치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같이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법철학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이것이 법철학 수업 수강자들의 숫자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 현실적 차원에서의 법철학 교육개선방안

그렇다면 현재 로스쿨 법철학 교육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구체화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 방안은 없을 것인가? 앞서 언급된 제도적 방안들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현실화되기 힘들거나 아니면 실제 그리 큰 효과가 있지 못할 방안들이라고 본다면, 결국 남는 방안은 학생들이 법철학 수업에 보다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과목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없을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철학이 단지 추상적 이론만으로 구성되는 분과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문제해결에도 관련되는 실천적 분과라는 점을 느낄 수 있게 법철학 수

업주제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물음들을 중심으로 혹은 실정법적 문제들과의 관련 속에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법철학이 지적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흥미진진한 과목임을 환기시키려는 노력 역시 요구된다. 이렇듯 법철학이 학생들에게 보다 가깝고 관심 있는 과목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 위해 본고는 법철학의 교육내용, 교육형식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법철학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한 제안

(1) 실정법 도그마틱에 대한 법철학적 성찰을 내용으로 한 연구 증대의 필요성

법철학 교육이 법철학지식의 단순한 전달뿐만 아니라 법철학적 성찰역량 역시 배양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수강주체를 누구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철학 교육내용의 방점 설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법실무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반성능력 향상을 목표로 삼을 경우—앞서 언급한 법철학적 성찰의 가능한 대상영역에 관한 모형에서—주로 낮은 층위의 대상영역에 법철학교육의 주 방점이 놓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법실무나 법도그마틱의 반성과 성찰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다. 반면, 실무가 아닌 학문영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이들의 반성능력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면 그 교육의 주 방점은 앞서보다 추상적 층위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의 설문분석은 로스쿨 교수님들께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함께 이전 법과대학체제에서보다 법실무가들의 법철학적 반성능력 향상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계심을 확인해 주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할 점 중 하나는 법철학교육이 법도그마틱이나 법학방법론 등 구체적 실무관련 문제에 대한 성찰에 비중을 두면 둘수록 실무에서 다루는 실정법적 내용들 중 법철학적 물음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추출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특히, 법철학적 성찰이 구체적 실정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수록 학생들의 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추출은 법철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법철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로서 무엇보다 실정법과 법철학의 연결고리에 법철학 교수님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투자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아무래도 각 개 실정법 영역의 구체적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해당전공자가 아닌 경우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 때문에 한편으로는 해당 법영역을 전공하는 학자들과 법철학자들의 공동연구나 대화의 장 마련이 의미가 있을 듯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통해 발굴된, 어느 정도 검증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공유의 장 마련이 필요할 듯하다.

실제 한국법철학회는 실정법학자들의 구체적 법적 작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철학적 논의의 활성화라는 목적에서 법학방법론에 관한 학술대회를 여러 차례 주최한 바 있다.[51] 그리고 여러 응용법철학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오고 있기도 하다.[52] 하지만 구체적 실정법 영역과 법철학적 성찰의 상호결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법철학적 성찰이 가능한 실정법의 구체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의 장 마련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모든 법영역에 공히 해당되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학방법론적 성찰뿐만 아니라, 헌법, 민법, 형법 등 각 개 실정법 도그마틱 영역 내에서 내용적으로 법철학적 성찰과 관련된 영역에 대한 발굴과 연구 역시 필요함을 의미한다. 헌법을 예로 들자면, 제반 기본권이나 중요 헌법원칙들의 확립은 전통적으로 법철학사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기본권이나 헌법도그마틱적 문제들과 관련해 유의할 대목은 법사상사적 차원에서의 연구뿐 아니라, 현재의 철학적 수준을 반영한 연구 역시 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알렉시(R. Alexy)가 드워킨(R. Dworkin)의 원리론을 이용해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그간 헌

51) 2009년 춘계학술대회는 "유추와 해석"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추계학술대회는 "법적 논증의 이론들: 쟁점과 현실"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2006년 춘계학술대회는 "법학의 방법과 법학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린 바 있다.

52) 한국법철학회 편, 『응용법철학』(아카넷, 2002).

법학계의 논의를 새롭게 성찰하고 새로운 이론적 지평을 연 것은 그 대표적 실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53] 토이브너(G. Teubner)나 피셔-레스카노(A. Fischer-Lescano)가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기본권의 성격을 새롭게 파악하고자 시도한 것도 그러한 일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54] 현재 우리 학계의 논의를 보면 헌법, 민법, 형법의 중요한 물음들이 대게 '판례실증주의'로 흘러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55] 물론 여러 실정법 학자들 스스로 이에 대한 성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 역시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례실증주의의의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철학자들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기본권이론, 민주주의 원칙, 법치국가 원칙과 관련해 현재 헌법학교과서의 많은 설명들이 30-40년 전의 철학이론이나 사회이론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만, 이들 설명을 새로운 판례들에 입각해 재갱신하기만 하는 경향이 많이 확인된다. 현대 법철학의 연구 성과들을 이들 논의에 재투입한다면 헌법학의 발전에도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을뿐더러, 구체적 법도그마틱에 맞닿는 법철학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각의 교수님들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계시지만, 여러 교과서들이 아직도 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이론의 세 이론만으로 헌법관(?)[56]을 설명하고 있는 현실도 법철학과 실정법학의 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실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3) 알렉시 (이준일 역), 『기본권이론』(한길사, 2007).

54) G. Teubner, "Die anonyme Matrix: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private' transnationale Akteure", *Der Staat* 45 (2006), S. 161ff.; R. Christensen/A. Fischer-Lescano, *Das Ganze des Rechts: Vom hierarchischen zum reflexiven Verständnis deutscher und europäischer Grundrechte* (Berlin, 2006).

55) 유사한 각도에서 김영환 교수는 "판례의 도그마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영환, 「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2006), 26면.

56) 실증주의, 결단주의, 통합이론 등에 대해 독일에서는 '헌법관'이라는 표현보다 '헌법이론(Verfassungstheorie)'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 것 같다. 물론 각 개 헌법이론들이 헌법을 보는 관점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겠으나 현대의 헌법이론들이 단지 '관점'이 아니라 보다 엄밀한 학문성을 추구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이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원래 그러한 이론들이 연원한 독일 학계에서는 70년대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러한 형태로만 헌법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57] 이러한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법철학 교수님들의 개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논의이론이나 체계이론의 성과가 쌓이면서 기본권이론, 민주주의 원칙, 법치국가 원칙에 대한 새로운 규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이론적 규명들이 새로운 헌재 판례들에 대한 국내외의 재구성 시도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 판례나 법도그마틱에 대한 성찰역량증대'를 목표로 하는 법철학 교육에도 큰 자극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간단히 헌법관련 부분만 설명했지만 동일한 형태의 법철학적 개입이 민법이나 형법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이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정법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정법 학자들 중 의외로, 대학원 때의 관심과 독서 등을 기반으로 법철학 연구에 관심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 이들과 일종의 연구그룹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예컨대, 독일 법철학회의 경우 법철학회 산하에 몇 개의 소규모 연구그룹을 조직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유용한 예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주제를 매개로 하여 공동학술대회를 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법철학적 성찰이 가능한 판례들의 풀 마련 필요성

법철학의 구체적 교육기반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실정법과 연계된 법철학 연구의 진행과 아울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수업시간에 법철학적 성찰의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판례들이나 도그마틱들, 혹은 법철학적 성찰이 가능한 사회적 이슈 등의 풀(pool)을 마련하는 것'이다. 예컨대, 법학

57) 현대의 독일헌법교과서들에서 우리 헌법 교과서에서 흔히 보이는 세 종류의 헌법관에 대한 설명을 유사한 형태로 찾기란 쉽지 않다.

방법론과 관련된 법철학적 성찰을 수업할 경우에 있어서 그 매개물로서 국내의 판례나 조문들을 활용하지 않고 독일이나 미국의 그것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나 관심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의 판례를 기반으로 한 본격적인 법학방법론 교과서는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58] 김영환 교수님의 법철학 교재 중 법학방법론 파트,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의 법이론 저서 등이 그나마 우리 판례를 기반으로 한 법학방법론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59] 이러한 교재 풀의 빈약함이 법학방법론 부분을 수업하는 법철학 교수님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와 닿는 설명을 제공하는 데에 있어 큰 어려움을 낳고 있다고 본다. 해당 실정법 과목 전문가가 아닌 이상, 분과구분이 명확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타 분과의 판례들을 독자적 판단에 따라 방법론 설명의 도구로 활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해당 실정법 교과서들을 훑으며 마땅한 판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까닭에 법실무가를 위한 법철학 교육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 중 하나가 법철학 교수님들이 모여 자신의 수업에 도움이 되었던 판례나, 사례, 사회적 사건, 도그마틱 등의 풀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주제별로 적절한 자원들을 모아 놓는다면 교수님들께서 언제고 참조해서 자신의 수업주제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제안은 학회 홈페이지에 학회원들이 이런 사례나 예시들을 모아놓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자료들을 모으고 공유할 수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쌓여 어느 정도의 질이 확보된다면 학회 차원에서 일종의 '(넓은 의미의) 사례집'을 묶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법학방법론 뿐만 아니라 법철학의 다른 중요한 주제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58) '법학방법론'이라는 제목을 가진 저서는 거의 독일 교과서의 번역본이다. 대표적으로 라렌츠/카나리스(허일태 역), 『법학방법론』(세종출판사, 2000); 치펠리우스(김형배 역), 『법학방법론』(삼영사, 1976).

59) 김영환, 앞의 책, 239면 이하;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세창출판사, 2005).

(3) 법철학 주요주제별 '사회적 이슈나 판례 관련 논문집' 발간

실무 정향적 법철학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법철학의 주요 주제들을 이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와 관련시켜 구체화해 내고, 이들 연구를 묶어 내는 작업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한국법철학회는 이미 이러한 작업을 직간접적으로 여러 번 수행한 바 있다. 5.18 책임자 처벌에 관한 사회적 논의 당시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60]이라는 저서를 묶어 내는데 학회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기여한 바 있고, '시민불복종'과 관련해서는 학회차원에서 법철학 총서를 발간한 바 있다.[61] '실화죄 판결'과 관련해서, 법철학회의 여러 중진교수님들이 참여하신 법률해석에 관한 저서 출간도 그 중요한 실례이다.[62] 개인적 판단에 따르면, 이러한 저서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법철학 교육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아마 법철학 수업 중 법학방법론, 특히 해석과 유추에 관한 부분을 다루실 때 많은 교수님들이 '실화죄 판결'을 설명하실 것이고 이 때 위에 언급한 저서 '법률해석의 한계'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시민불복종'에 관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들 저서들은 구체적 사례에서 법철학의 전문이론들이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저서의 존재는 수업 시 해당 법철학 주제들의 생생한 소개와 토론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 이 외의 여타 법철학 주제들에 대해서도 한국사회의 현실이나 사례들과 관련해 논의를 수행하고 이를 책으로 묶어 낸다면 법철학 교육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60) 박은정/한인섭 편, 『5. 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61) 한국법철학회 편, 『시민불복종과 법치국가』(법문사, 2001).
62) 신동운 외, 『법률해석의 한계』(법문사, 2000).

2) 법철학 '교육형식'의 개선을 위한 제안

지금까지 법철학 교육내용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제 법철학 교육형식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철학 관련 영화, 혹은 뉴스들의 풀을 마련해 보는 것 혹은 법철학 주요주제와 관련된 '생각해 볼 문제'들의 목록을 공동으로 작성해 보는 것 등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한 학회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토론전개의 모형을 마련해 보거나 법철학 주요 주제별로 제시 가능한 논거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법철학 교육형식의 개선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원전발췌 텍스트의 발간이 가능하다면 원활한 수업진행이라는 측면에서나 학생들의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63]

Ⅴ. 맺으며

본고는 우선 법학의 학문이론에 관한 논의에 터 잡아 법철학 교육내용이 법철학 수강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 법철학 교육내용이 교수님들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결과의 분석에 터 잡아 검토해 보았다. 동시에 법실무가 정향의 교육내용 구성에 의해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의 약화와 그 극복방안에 대해서도 법학의 학문이론적 논의에 기반을 두어 다루어 보았다. 다음으로는 보론의 형식을 빌려 로스쿨 체제하에서 채택되고 있는 법철학 교육형식의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분석을 간단히 소

63) 본절은 '법철학 교육형식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해 원래의 발표문이 담고 있었던 서너 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내용을 지면관계상 압축한 것이다. 그 결과 그러한 제안들의 이유와 상세한 방안에 대한 설명이 생략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에 대해 관심 있는 독자는 이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대회 발표집'을 참조하길 바란다.

개하였다. 하지만 교육형식과 교육내용의 구체화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 교육이 현재 어떠한 제도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문결과의 분석에 터 잡아 분석해 보고, 내용적·형식적 차원에서 최선의 교육방식이 관철될 수 있기에는 법철학 교육이 현재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건 속에서 법철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제기해 보았고 이를 '제도 개선'이라는 차원과 '법철학 과목의 경쟁력 확보방안'이라는 차원에서 답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로스쿨 체제 하에서 법철학을 비롯한 기초법 과목의 교육이 쉽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는 일찍이 여러 법철학 교수님들께서 로스쿨 개원 이전에 이미 경고하고 계셨던 바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비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에서 보이듯이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회 이곳저곳에서 싹터 오르고 있음 역시 확인가능하기 때문이다.[64] 이는 법철학 담당 교수님들이 맡은 수업 자체에서도 확인가능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변호사시험 준비라는 어려운 제도적 여건 하에서도 법철학을 듣고자 신청한 학생들의 관심은 경우에 따라 하나의 학문영역의 시대적 퇴락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진지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기에 대한 인식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센델 교수의 책에서도 보이듯이 독자에게, 그리고 수강자에게 다가가는 법철학 교육, 그들과 대화하는 법철학 교육을 시도함으로써 과감히 우리만의 성채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오히려 법철학은 '법학도라면 한번쯤 들어봐야 하는 과목 아냐'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법학 내의 일반교양이자 심층교양으로서의 새로운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64) 마이클 샌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2010).

만 이는 단지 기대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법철학 교수님들이 공동의 협력 하에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에야 이는 현실화 가능한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고가 이러한 노력의 구체화를 위한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미약한 기대를 가져보며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6.

_____, 「법학방법론과 법학교육」, 『법철학연구』 제9권 제2호, 2006.

라인홀트 치펠리우스 (김형배 역), 『법학방법론』, 삼영사, 1976.

로베르트 알렉시 (변종필 외 역), 『법적 논증이론: 법적 근거제시 이론으로서의 합리적 논증대화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7.

로베르트 알렉시 (이준일 역), 『기본권이론』, 한길사, 2007.

마이클 샌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박은정/한인섭 편, 『5. 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성낙인, 「로스쿨시대의 기초법학」, 『법률저널』, 2009. 12. 31.

신동운 외, 『법률해석의 한계』, 법문사, 2000.

심헌섭, 「법철학적 법학방법론: 법철학과 합리적 법학방법」, 『법학』 제24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83.

아르투어 카우프만 (김영환 역), 『법철학』, 나남, 2006.

양천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방법론: 기초법학을 예로 하여」, 『사회과학연구』 제27집,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오세혁, 「우리나라 법학방법론의 전개」, 한국법철학회 편, 『한국 현대법철학의 형성과 전개』, 세창출판사, 2010.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 역), 『의사소통행위이론 2: 기능주의적 이성비판을 위하여』, 나

남, 2007.

이계일, 「법학의 문제변증적 성격을 둘러싼 법철학적 논의와 법학교육의 방향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3,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상돈, 『새로 쓴 법이론』, 세창출판사, 2005.

칼 라렌츠/클라우스-빌헬름 카나리스 (허일태 역), 『법학방법론』, 세종출판사, 2000.

한국법철학회 편, 『시민불복종과 법치국가』, 법문사, 2001.

_____, 『응용법철학』, 아카넷, 2002.

O. Ballweg, "Phronesis versus Practical Philosophy", in: H.-J. Koch/ U. Neumann (Hrsg.), *Praktische Vernunft und rechtsanwendung*, Stuttgart, 1994.

O. Ballweg, "Medium jeder Rhetorik ist die Meinung", in: J. Dyck/W. Jens/G. Ueding (Hrsg.),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Juristische Rhetorik*, Tübingen 1996.

O. Ballweg, "Vernunft versus Rationalität des Rechts? Zur Theoriebildung in der Rechtswissenschaft", in: H. Haller u. a. (Hrsg.), *Staat und Recht. FS für G. Winkler zum 60. Geburtstag*, Wien [u. a.], 1997, S. 536 ff.

E. R. Bierling, *Juristische Prinzipienlehre*. 5. Bände, Tübingen, 1917.

R. Christensen/A. Fischer-Lescano, *Das Ganze des Rechts: Vom hierarchischen zum reflexiven Verständnis deutscher und europäischer Grundrechte*, Berlin, 2006.

G. C. Christie/ P. H. Martin, *Jurisprudence: Text and Readings on the Philosophy of Law*, Thomson/West, 1995.

J. Esser,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2. Aufl., Kronberg Ts., 1972.

J. Esser, "Dogmatik zwischen Theorie und Praxis"(1974), wieder abgedruckt in: ders., *Wege der Rechtsgewinnung*, hrsg. von P. Häberle/H. G. Leser, Tübingen, 1990.

L. Geldsetzer, "Über zetetischen und dogmatischen Umgang mit Philosophiegeschichte", in: H. R. Yousefi [u.a.] (Hrsg.), *Wege zur Wissenschaft. Eine interkulturelle Perspektive. Grundlagen, Differenzen, Interdisziplinäre Dimensionen*, Nordhausen 2008.

J. Habermas, *Die Wahrheit und Rechtfertigung: philosophische Aufsätze*, Frankfurt am Main, 2004.

W. Krawietz, *Recht als Regelsystem*, Darmstadt, 1984.

W. Krawietz, "Recht als Information und Kommunikation", in: J. Brand/D. Strempel (Hrsg.), *Soziologie des Rechts, FS für Erhard Blankenburg zum 60. Geburtstag*, Baden-Baden, 1998.

N. Luhmann, *Ausdifferenzierung des Rechts: Beiträge zur Rechtssoziologie und Rechtstheorie*, Frankfurt am Main, 1981.

N. Luhmann, *Das Rech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1993.

M. Morlok, *Was heißt und zu welchem Ende studiert man Verfassungstheorie?*, Berlin, 1988.

H. Nawiasky, *Allgemeine Rechtslehre*, 2. Aufl., Einsiedeln [u.a.], 1948.

H.-M. Pawlowski, *Einführung in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 2. Aufl., Heidelberg, 2000.

K. F. Röhl/H. C. Röhl, *Allgemeine Rechtslehre*, 3. Aufl., Köln, 2008.

B. Rüthers, *Rechtstheorie*, 4. Aufl., München, 2008.

F. Schauer/W. Sinnott-Armstrong, *The Philosophy of Law: classic and contemporary readings with commentary*,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1996.

K. Sobota, "Argumente und stilistische Überzeugungsmittel in Entscheidungen des Bundesverfassungs gerichts", in: Joachim Dyck/Walter Jens/Gert Ueding (Hrsg.), *Rhetorik. Ein internationales Jahrbuch, Bd. 15: Juristische Rhetorik*, Tübingen, 1996.

Th. Sternberg, *Allgemeine Rechtslehre*, Leipzig, 1904.

G. Teubner, "Die anonyme Matrix: Menschenrechtsverletzungen durch 'private' transnationale Akteure", *Der Staat 45*, 2006.

M. Weber, "Die 'objektivität' sozialwissenschaftlicher und sozialpolitischer Erkenntnis(1904)", in: ders., *Gesammelte Aufsätze zur Wissenschaftslehre*, 3. Aufl., Tübingen, 1968.

F. Wieacker, "Zur praktischen Leistung der Rechtsdogmatik", in: R. Bubner/K. Cramer/R. Wiehl (Hrsg.), *Hermeneutik und Dialektik, FS für H. G. Gadamer*, Bd. II, Tübingen 1970.

Th. Viehweg, "Systemproblem in Rechtsdogmatik und Rechtsforschung"(1968), wieder abgedruckt in: ders.,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hrsg. von Heino Garrn, Baden-Baden, 1995.

Th. Viehweg, "Ideologie und Rechtsdogmatik"(1969), wieder abgedruckt in: ders., *Rechtsphilosophie und rhetorische Rechtstheorie*, hrsg. von Heino Garrn, Baden-Baden, 1995.

<Abstract>

The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philosophy of law under the changed educational system of law

Lee, Kye-Il*

In this paper, the status and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philosophy of law und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that opened two years ago, have been examined. Especially, the curriculums and educational forms of philosophy of law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have been reviewed, and then a survey, targeting 10 schools, has been conducted for empirical research.

With respect to the order of the review, in the first place, the review on the object areas for law in the light of science of philosophy has been looked over by focusing on the theories of W. Krawietz and Th. Viehweg, and then through such patternization, the available forms of the curriculums for philosophy of law have been patternized. Next, the forms taken by the curriculums for philosophy of law in the Korean colleges have been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result. After this, by borrowing the types of boron, the analysis of survey for the status of the educational forms of philosophy of law under the current law school system was briefly introduced. In the following chapters, the

* Assistant Professor in Law, Wonkwang University (kilee@wonkwang.ac.kr)

institutional conditions where the curriculums and the educational forms of philosophy of law are placed,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And in the last chapter, what could be done for the improvement and the development of the education of philosophy of law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has been briefly viewed before the closing of our discussion.

[Key Words] education of philosophy of law, law school, philosophy of science, W. Krawietz, Th. Viehweg, curriculums, educational forms, institutional conditions, survey

접수일 : 2011. 4. 1, 심사일 : 2011. 4. 5~4.12, 게재확정일 : 2011. 4.20